

간호비 지급기준

- ① 간호비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1등급 내지 간병3등급」로 구분된다.
- ② 간호비는 중환자실, 회복실, 또는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한다.
 - 완화의료(호스피스)서비스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 환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승인상병이 아닌 개인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③ 간호를 담당하는 자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요양보호사를 전문간병인으로, 그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은 기타간병인으로 구분하고, 전문간병인이 담당할 경우 간병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과 간병료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지급 결정한다.
- ④ 간호비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의사소견서(필수서류)
 - 간호 필요기간의 간호기록지 사본(필수서류)
 - 간병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과 간병료 영수증(전문간병인이 간병 시)
 - 신체마비환자의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지

□ 간병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9호(2014. 8. 1. 이후 적용)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가족·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의 범위】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p>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p>	<p>해당 등급 없음</p>	<p>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p>	<p>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p>
<p>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p>	<p>두 눈의 실명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p>	<p>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p>	<p>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p>
<p>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p>	<p>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이 혼수·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p>	<p>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p>	<p>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p>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뇌손상의 후유증 또는 그 밖에 치료 과정에서 정신·신경계통 장애 등이 동반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다만, 단순한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퍼센트 이상으로 급성기 조직액의 유출로 전신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퍼센트 이상으로 급성기 경과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퍼센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양 팔과 양 다리의 사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을 유지할 위한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간호 범위별 세부 적용등급】

(㉞)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등급	간호필요정도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혼자 힘으로 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급성기 치료가 경과된 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등에 대해 적응기간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경우에만 식사가 가능한 사람을 의미

(㉟)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등급	간호필요정도
1등급	두 눈의 실명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급성기 치료가 경과된 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등에 대해 적응기간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㊱)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

등급	간호필요정도
1등급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이 혼수·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다는 의미는 정신 착란으로 충동조절 불능, 혼돈상태(지남력이나 판단력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신과 폐쇄병동 수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간병 대상에서 제외

(라)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호)

등급	간호필요정도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해당등급 없음
3등급	뇌손상의 후유증 또는 그밖에 치료 과정에서 정신·신경계통 장애 등이 동반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다만, 단순한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이라 함은 말하기·쓰기·알아듣기 기능을 모두 잃은 경우를 의미함.

(마)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

등급	간호필요정도
1등급	화상의 깊이는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이상으로 급성기 조직액의 유출로 전신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이상으로 급성기 경과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이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급성기 조직액의 유출로 계속적 화상부 치료와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공급이 필요한 경우나 전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등은 1등급 적용

○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은 아니지만 화상 부위의 특수성(예 : 양손·양발의 화상 등) 또는 합병증을 고려할 때 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가장 유사한 간호범위에 해당하는 간호등급으로 적용 가능

■ 화상의 넓이는 체표면적에 대한 화상범위를 백분율로 표시. 머리와 목 9%, 앞가슴과 배 18%, 등과 허리 18%, 한쪽 다리 18%, 한쪽 팔 9%, 회음부 1%로 구분

■ 화상의 정도 : 화상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 4도로 구분

- 1도- 환부의 동통과 발적 현상, 약간의 부종이 동반되며 물집이 생긴 상태
- 2도- 피부가 익어 갈색이 된 상태로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되어 발적 현상을 보이고 물집형성과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
- 3도- 피부 피전층까지 손상 받은 경우로 흰색 또는 타버린 검은색으로 변하며 피부감각을 상실하여 핀으로 찔러도 동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 4도- 피부의 전층과 함께 피하의 근육, 힘줄, 신경 또는 골조직까지 손상을 받은 상태

(배)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제6호)

등급	간호필요정도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양 팔과 양 다리의 사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견인장치는 원칙적으로 침상에 고정된 것에 한하여 인정

(사)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7호)

등급	간호필요정도
1등급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완전 사지마비가 아니라도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 활동(기도확보, 체위변경, 음식물 삼키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1등급 적용

○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침대에서 휠체어로」의 옮겨 앉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 옮겨 앉아 스스로의 힘으로 보조기·휠체어를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

(예)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8호)

등급	간호필요정도
1등급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자력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등급을 적용
-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스스로 체위변경이나 기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1등급 적용

(재)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9호)

등급	간호필요정도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해당등급 없음
3등급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 수술 후 간호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의 승인을 요함.
 - 승인을 요하는 경우 특수요양비승인신청서(제216호 서식)를 작성하고, 담

당의사소견서와 관련 증빙자료(간호기록지 사본, 간병인의 자격증사본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채)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

등급	간호필요정도
1등급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식사·씻기·배뇨·배변·옷 입고 벗기 등)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간호의 필요정도 일반사항 및 아래 등급별 일반 적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비슷한 간병범위에 따른 간병등급 적용